

#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「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」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

-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던 주민감시 제도를 조례로 제정(안 제4조의 2)

나. 주민과 감시요원 지원에 관한 사항

-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(안 제1조 ~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 10. 25 ~ 2011. 11. 14(20일간) 실시, 제출의견 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분뇨처리시설설치”를 “분뇨처리시설 설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주변지역”이라 함은 당해”를 ““주변지역”이란 해당”으로, “받게되는”을 “받게 되는”으로,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조례는”을 “조례는 평창군”으로, “읍·면이상”을 “읍·면 이상”으로, “분뇨처리시설물”을 “분뇨처리 시설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”를 “제3조에 따른 시설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역주민의 감시)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감시요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주변지역</u>”이라 함은 당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<u>군수가</u>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관내 설치하는 4개 읍·<u>면이상</u>이 공동 사용하는 <u>분뇨처리시설물</u>에 적용된다.</p> <p>제4조(지역개발에의 반영) <u>제3조의</u>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<u>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분뇨처리시설 설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“<u>주변지역</u>”이란 해당 ----- ----- --- <u>받게 되는</u> ----- ----- <u>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 <u>조례는 평창군</u> ----- <u>읍·면 이상</u>----- ----- <u>분뇨처리 시설물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지역개발에의 반영) <u>제3조에</u> 따른 시설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3.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&lt;신 설&gt;</p> <p>제5조(재정지원)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사업의 추진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,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3. 그 밖의 -----</p> <p>제4조의2(지역주민의 감시)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재정지원) ----- ----- 주민과 감시요원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제6조(사업의 추진) 제5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 가. 비용발생 요인

- 주민감시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

### 나. 관련조문

- 제4조의2(지역주민의 감시)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- 제5조(재정지원)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감시요원 2명으로 월 1인 800천원씩 보상금 지급 년 19,200천원 소요

(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2007.8.1일부터 시행중임.)

### 나. 추계 결과

위생처리장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주민 감시요원 지속 운영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전액 지방세(군비) 세입으로 충당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
연락처	(033) 330 -2363

**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2년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 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19,200	19,200	19,200	19,200	19,200	96,000
감시요원 2명 (인건비 보상)		19,200	19,200	19,200	19,200	19,200	96,000
재원 조달		19,200	19,200	19,200	19,200	19,200	96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9,200	19,200	19,200	19,200	19,200	96,000
	지방세	19,200	19,200	19,200	19,200	19,200	96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